

우석대학교 학칙 개정 사유서

1. 개정 규정명칭

- 「우석대학교 학칙」

2. 개정사유

- 전공 특성, 진로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학기제(청춘학기 및 연구학기제, 창업학기제 등) 시행 등을 위한 자율학기제 운영 및 학생자율수업 진행
- 학생선택권과 창의융합 전공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트랙 등 다중전공 운영
- 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, 학습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험학습학점제 운영

3. 붙임

- 「우석대학교 학칙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우석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1조(학년도 및 학기) ①학년도는 3 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②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 1.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.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. ③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11조(학년도 및 학기)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필요한 경우 <u>자유학기제와</u>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
제2절 수업방법 제14조(수업방법) ①본교의 수업은 필요에 따라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원격수업, 현장실습수업, 창업실습수업, 집중이수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②<삭제 2019.2.26.> ③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2절 수업방법 제14조(수업방법) ①본교의 수업은 필요에 따라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원격수업, 현장실습수업, 창업실습수업, 집중이수제, <u>학생자율수업</u>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
제4절 복수전공 등 제48조(복수전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, 학생자율설계전공, 특성화 트랙) ①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합전공, 연계전공, 학생자율설계전공(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)이나 특성화 트랙(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과 및 융·복합 특성화 트랙)을 운영할 수 있다. ③복수전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 및 학생자율설계전공, 특성화 트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4절 다중전공 등 제48조(다중전공) ① 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다른 전공(이하 “다중전공”이라 한다.)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로 정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 복수전공 : 2개 이상의 전공 2. 융합전공 : 2개 이상의 학과(부)가 융합하여 각 학과(부)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신설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3. 연계전공 : 2개 이상의 학과(부)가 참여하여 각 학과(부)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4. 전공트랙 : 1개 이상의 학과(부)에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분야 등에 따라 트랙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5. 학생자율설계전공 :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다중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정해진 학위를 수여한다. ③ 다중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49조의2(특성화트랙) 신설	제49조의2(특성화트랙) ①취업 및 창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에 적합한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성화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. ②특성화트랙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현행	개정(안)
제55조(학위수여) ①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1. 학과(부)별 이수학점총괄표에 의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2. 8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(조기졸업 대상자는 제외) 3.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논문 대체가 인정된 자 4. TOPIK 성적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(외국인에 한함). 단, 교환학생, 정부초청 장학생, 외국정부 지원 장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. 5. 외국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양교의 학점 이수 및 졸업에 관한 기타요건을 충족한 자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, 본교에 해당 학과(부)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 1-3호의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1.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, 전공 60학점 이상,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.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. 4.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(부)의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. ④제1항 제3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 ⑤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학위를,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학위증서에 표기한다.	제55조(학위수여)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<u>다중전공을</u> 이수한 자에게는 <u>정해진 전공학위를</u>,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학위증서에 표기한다.
제40조의2(신설)	제40조의2(경험학습학점제) ①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, 학습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②경험학습학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	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